

'05. 12. 23(금)
제245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23.
제245회 정례회

1. 심사 경과

가. 발 의 자 : 김홍운 의원외 6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5년 12월 6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19 :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운 의원)

가. 제안 이유

-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 시스템상에서 운영되는 민원창구 명칭을 '전자민원 창구'로 일원화 하고 있는데도 현행 조례는 '사이버 민원실'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조례명 등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변경함.

(안 제3조 제2항,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행정자치부가 2003. 7. 22. 제정한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에는 인터넷상 민원창구를 “전자민원창구”로 일원화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동 방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창구 명칭이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에 전자민원 창구로 일원화 되어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한다.

제3장의 제목을 “전자민원 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8조의2 (전자민원창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17호, 2003.7.22 제정)

1-1. 목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2. 용어의 정의

① 전자민원

각 행정기관 등이 소관 「민원사무」(영 제2조제2항 참조)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5호 참조)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종류와 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공표한 민원사무를 말함. (전자정부법 제33조)

② 행정기관(생략)

③ 전자민원창구(생략)

④ 통합 전자민원창구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함.

1-3. 본 지침의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3. 용어의 정의 참조)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에 대하여 적용함.

1-4. 전자민원과 일반민원과의 차이

- 전자민원과 일반민원(전화, 팩스, 방문민원 등)은 신청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민원사무라는 측면에서 서로 동일함.

1-5. ~ 1-8. (생략)

2-1.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명칭

- 「전자민원창구」는 행정기관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자민원창구」의 위치는 당해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함.
- 기관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원창구의 명칭은 「전자민원창구」로 통일함.

2-2. (이하 생략)